



Ⅱ. 정보공개 제도의 이 해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13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13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 14
4. 정보공개법상 공개기관의 의무 - 14
5. 정보공개 관련 인터넷사이트 - 14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2.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가 중요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 국가 정보의 균등 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 방지 효과

-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차단 가능

3. 정보공개 제도의 연혁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1992. 1. 4)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1994. 7.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8. 4. 제정)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1998. 1. 1.)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2001. 11.)

나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2. 10. 24.)

국무총리 훈령 제정 (2003. 6. 24.)

정보공개법 개정 (2004. 1. 29.)

-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4. 1. 29.)

개정 (2006. 10. 4.)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수립·공개 의무화

-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2009. 4. 20.)
-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문개정(2009. 8. 3.)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 (법 제6조제1항)
- 정보 관리 체계 정비 의무 (법 제6조제2항)
- 정보공개 처리 상황의 기록·유지 의무 (영 제16조)
-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 (법 제8조, 영 제5조)
- 공개 제도 운영 준비 (법 제8조, 영 제5조)

5. 정보공개 관련 인터넷 사이트

- 나주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코너(www.naju.go.kr)
-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admin.open.go.kr 또는 iadmin.open.go.kr)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함)